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7. 4. 21. 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2016.7.12.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관련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사용료·대부료·매각대금·교환차금·변상금·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개정 (안 제19조의2, 안 제37조, 안 제40조, 안 제40조의2, 안 제62조, 안 제62조의2)
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재산의 대부규정 등 삭제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(안 제28조, 안 제30조)
-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및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른 용어 정리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·대부료·매각대금·교환차금·변상금·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,
- 그 밖에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및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됨.